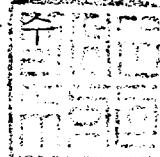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일 : 2000. 12. 5.

제출 : 달성군



###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조항을 정비·완화코자 함.

###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3조 내지 제118조의3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내지 제107조

### □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 마을회관, 노인회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함. (안 제5조)

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시 특례지원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적용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안 제18조 내지 제24조)

다. 경작목적의 대부료에 대해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 (안 제22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경우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토록 함. (안 제22조)

마.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함. (안 제22조)

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대부(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사. 경작목적의 대부료 납기를 종전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대부계약시 사전납부가 되도록 함. (안 제27조)

아.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규정함. (안 제33조)

자.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중 종전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규정함. (안 제39조)

차.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준용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63조)

## □ 개정조례안 : 볼 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국유 잡종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재지 읍·면장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 ② 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 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 ④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 2 장 행정재산의 관리

**제10조 (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3.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4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잡종재산관리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7조 (연고권의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산업단지안의 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
4. 군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기타 군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할 것이 확실하며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일 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3. 군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을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이후로 정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

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군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후생복지 목적으로 하는 재산

-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⑦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⑧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년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범위와 요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이상	20%미만 5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한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한다.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를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 한다.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납부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의 연체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장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3(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 4 장 공유임야관리

**제34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

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의년도 예산편성 전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보상 또는 협의취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제곱미터이하인 농경지로서 동일인이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제로 경작중인 농경지로 한다.

②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점유한 폐천부지가 농경지인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로 700제곱미터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나 산업시설부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잔여면적도 포함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공유재산 매각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산업단지안의 재산,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분양 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
  3. 군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그 매각대금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안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안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매각대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센트를 수출하는 사업장안의 재산
-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안의 재산
-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매각대금을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 2.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안의 재산
  -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지 안의 재산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 6 장 기 부 채 납

**제42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3조(무상사용 혜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혜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5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 7 장 청사 관리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시장의 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청사신축 시행계획서를 신축년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냉·난방시설 및 통신·정보화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50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서도 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 8 장 관 사 관 리

**제5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3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군 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1급 내지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제54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를 군수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6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8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 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단, 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제59조(사용료의 면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0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인수 등)** ①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2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 제 9 장 보 칙

**제63조(준용)** ①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공유재산의 적용과 제22조제2항, 제6항 단서, 제7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감면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어 매매계약을 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특례적용의 제외)** 청사사용허가에 있어서 제2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대부료 인상을 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